

---

- 2020년 의회사무과 재무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삼척시**  
**[기획감사실]**

## 2020년 의회사무과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4건	주의 1 시정 3		1,204,000		
1	의회 사무과	2020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	의회 사무과	2018~ 2019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미이행	시정				
3	의회 사무과	2019	착공신고서 검토 소홀 및 보험료 사후정산 누락	시정	감액	1,105,000		
4	의회 사무과	2018~ 2019	출장여비 과다 지급 및 공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시정	회수	99,000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의회사무과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현황

지급일	집행내용	수량	내용	금액 (천원)	지출과목	적 정 지출과목
2020.03.26	의회 휴게실(2층) 음료 및 소모품 구입	1식	커피자판기 재료 등	287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6조에서 정한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구분하며,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현수막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간판, 감사패 등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 잡지 등 구입비, TV, 신문 등에 의한 광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의회 휴게실 음료 및 소모품 구입’ 1건 287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커피자판기 재료는 일반수용비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로써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의회사무과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미이행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세	발급일자	발급처
계	8건			180		
1	삼척시의회 ** 방수공사	****(주)	**,***	20	2018.**.**	**은행
2	삼척시의회 **** ** **	(주)****	**,***	40	2018.**.**	**은행
3	삼척시의회 **** ** 설치	(주)*****	**,***	20	2019.**.**	**은행
4	삼척시의회 ***** 교체공사 설계용역	**** *****	**,***	20	2019.**.**	**은행
5	제7대 삼척시의회 **** 인쇄	****	**,***	20	2019.**.**	**은행
6	삼척시의회 ** **** 교체공사	**** **	**,***	20	2019.**.**	**은행
7	*** **** 학술용역	***** *****	**,***	20	2019.**.**	**은행
8	의회 *** 및 *** **** **공사	(합)****	**,***	20	2019.**.**	**은행

##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원’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sup>1)</sup>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8건 167,595천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받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소인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당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1) 전자적 소인처리는 [gov.e-revenuestamp.go.kr](http://gov.e-revenuestamp.go.kr)에서 수행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소인한 전자수입인지에 대하여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의회사무과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105,000원

【제 목】 착공신고서 검토 소홀 및 보험료 사후정산 누락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비고
계 - 1건				△ 1,105	
의회 *** 및 *** **** **공사 [(합)**** **]	'19.**.**.	'19.**.**. ~'19.**.**.	**,****	△ 1,105	보험료 등 미정산

###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의하면, 입찰참가자<sup>2)</sup>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의회 □ 및 ● ◇ ▣공사’에 대하여 낙찰률 90%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업체로 하여금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계약 업체에서 제출한 착공내역서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의회 □ 및 ● ◇ ▣공사 착공내역서 제출내역

(단위 : 원)

비 목		예정가격(설계내역서)	착공내역서	비 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	*,***,***	
	간접재료비			
	<b>소계</b>	<b>*,***,***</b>	<b>*,***,***</b>	
노무비	직접노무비	**,**,***	**,**,***	
	간접노무비	***,***	***,***	
	<b>소계</b>	<b>**,**,***</b>	<b>**,**,***</b>	
경비	산재보험료	***,***	***,***	
	고용보험료	**,**,***	**,**,***	

2)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보험료 사후정산은 제1장제8절 준용

	국민건강보험료	334,881		착공내역서 반영 누락 (사후정산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466,55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498		
	기타경비	***,***	***,***	
	소계	*,***,***	*,***,***	
	계(재료비+노무비+경비)	**,**,***	**,**,***	
	일반관리비(6%)	***,***	***,***	
	계	**,**,***	**,**,***	
	이윤(15%)	*,***,***	*,***,***	9.6% 조정
	계	**,**,***	**,**,***	
	부가가치세(10%)	*,***,***	*,***,***	
	도급액	**,**,***	**,**,***	낙찰률 90%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2019.\*\*.\*\* (합)▲ ㉠와 계약체결 시공한 ‘의회 □ 및 ● ◆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의 산출내역서상에 건강·연금·장기요양 보험료를 발주내역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낙찰률 적용에 따른 계약금액을 맞추기 위해 건강·연금·장기요양 보험료를 모두 삭감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강·연금·장기요양 보험료를 사후정산 처리하지 않아 1,105천원을 과다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착공신고 시 산출내역서에서 임의로 삭감하여 과다 집행된 보험료 1,105,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의회사무과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99,000원

【제 목】 출장여비 과다 지급 및 공용차량 운행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3건					99,000	
공용차량 정비입고	◇	2018.**.**	오산	86,400	63,200	23,200	공용차 이용(편도)
공용차량 정비완료	◇	2018.**.**	오산	86,400	63,200	23,200	공용차 이용(편도)
공용차량 정비	◎	2019.**.**	오산	82,600	30,000	52,600	공용차 이용(왕복)

※ 시외버스요금표(삼척 → 강릉) : (2018년) 5,300원 / (2019년) 6,000원

※ 시외버스요금표(강릉 → 오산) : (2018년) 17,900원 / (2019년) 20,300원

## 나. 공용차량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관리 현황

운행일자	차량번호	운전자	동승자	용무	운행거리(km)	배차여부
2018.**.**	38부****	■ (▨과)	◆	공용차량 정비입고	270	배차승인
2018.**.**	38부****	-	-	-	-	미배차
2019.**.**	38부****	●	-	1호차량 수리	489	미배차

※ 2018.\*\*.\*\*.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 2. 내 용

### 가. 관외출장여비 과다 지급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15조, 제16조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sup>3)</sup>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관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3)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공용차량 정비입고’ 등 2건의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발 또는 복귀 시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편도만 시외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자동차운임을 왕복 요금으로 지출하였으며, ‘공용차량 정비’ 1건은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당일 정비완료 후 복귀하여 자동차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교통비 왕복운임을 지급하여 자동차운임을 과다 지급하였다.

## 나. 공용차량 운행관리 소홀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일 하루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여,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1.차량정수관리대장 2.차량배차신청(승인)서 3.차량유류수불대장 4.차량운행일지 5.차량정비대장 6.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중 일부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행정시스템에 따라 기록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2018.\*.\*. ‘공용차량 정비완료’에 따른 차량 인수를 위한 관외출장 시 사전에 차량배차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일지 또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공용차량 정비’ 관외출장 건은 사전에 차량배차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운행하여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99,000원을 회수 조치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 사용 시 전산행정시스템을 통해 차량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추진 및 공용차량 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